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 번호	323
----------	-----

제출년월일 : 2017. 5.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47,832천원으로서, 이중 10건에 852,643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계(10건)	852,643천원
○ 5.2~5.5 강풍피해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보수		18,810천원
○ 5.2~5.5 강풍피해에 따른 계방산정보화마을센터 피해복구		4,700천원
○ 5.2~5.5 강풍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복구		37,000천원
○ 5.2~5.5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33,875천원
○ 봉평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유실에 따른 긴급복구		200,000천원
○ 2015년 평창운수(주)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		22,800천원
○ 2016년 평창운수(주)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		150,000천원
○ 5.2~5.5 강풍피해에 따른 교통시설 복구		39,000천원
○ AI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		7,000천원
○ 5.2~5.5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재해지원금		239,458천원 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